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통관 애로해소 가이드맵

GUIDE MAP FOR EXPORTERS TO ASSIST  
OVERSEAS CUSTOMS PROCEDURE



## I. 해외통관애로 개요

### 📍 해외통관애로란?

#### 정의

**해외통관애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면서 관세·비관세 장벽 등으로 외국 세관에서의 통관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과 직결되는 해외통관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결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신흥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 1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발굴

국내 : 관세청(국제협력팀,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수출관련 유관기관  
해외 : 관세관, 재외공관, KOTRA, 현지 진출기업 등

#### 2 대응방안 마련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 3 해소 활동

청장회의 개최, 관세관 활동 등을 통해 해외통관애로 해소 적극 지원  
- 현지 관세당국 협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 품목분류 등 주요안건 국제관세기구(WCO) 의제화, 신속지원팀 파견 및 현지설명회 개최

#### 4 사후관리 및 예방활동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해소사례집을 발간·배포

## II. 이런 Tip 아셨나요?

### 📍 FTA 활용

#### 💡 TIP 1 국가별 HS(품목분류) 및 관세율 사전확인

##### 조회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세계 HS정보

구분	내용
대한민국 관세율 정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관세율표(기본, 양허, FTA세율), 속건표, 품목번호별 품목분류사례 수록
해외 관세율정보	미국이나 EU(유럽연합)등 우리나라와 FTA체결을 맺은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 총 53개국 관세율 정보 (기본, 협정, 양허, FTA 세율 포함)
해외 품목분류 사례정보	미국, EU(28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총33개국 (약 78만건의 해외 품목분류사례)

#### 💡 TIP 2 FTA 특혜세율 활용

##### 조회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관세청 FTA포탈(Yes FTA)

##### 수출 활용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FTA 협정 발효국 확인	품목번호 확인	FTA 관세혜택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증명서 송부 (관련서류 보관)

##### 수입 활용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FTA 협정 발효국 확인	품목번호 확인	FTA 관세혜택 확인	수입진행 (원산지 증명서)	협정세율 적용신청	서류보관 및 원산지검증 대비

#### 💡 TIP 3 FTA e-c/o(EODES)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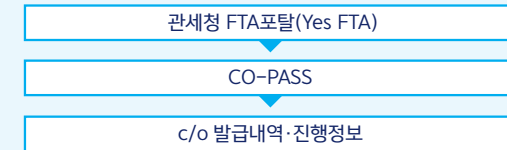
##### 현황

- 대상 : 한·중 FTA(APTA) 원산지증명서
- 적용 :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증명 정보를 수입국세관에 실시간 전송하면 수입국세관은 해당자료를 활용하여 수입심사

##### 프로세스



##### e-c/o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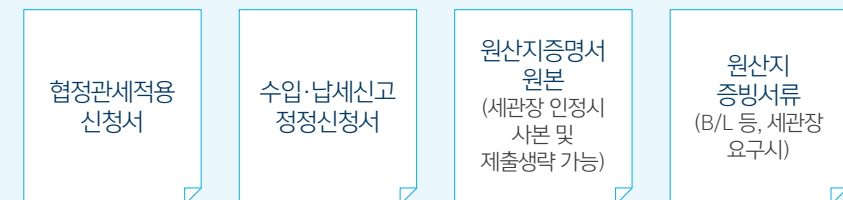


#### 💡 TIP 4 FTA 특혜관세 사후 신청

##### 신청 방법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 신청가능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세관장에게 전자 제출(세관요구서 서면제출)

##### 제출 서류





## 해외통관애로 상담(국내·외) 연락처

(\*18. 10월말 현재)

구분	기관	연락처
대한민국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 화 : 02-510-1378 이메일 : seoulsupport@korea.kr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 화 : 032-452-3639 이메일 : incheon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 화 : 051-620-6979 이메일 :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 화 : 053-230-5186 이메일 : daeg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 화 : 062-975-8193 이메일 :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전 화 : 031-8054-7043 이메일 : fta016@korea.kr
	관세평가분류원 HS국제분쟁센터	전 화 : 041-714-7539 이메일 : hssupport@korea.kr
해외관세관	EU(브뤼셀)	전 화 : (+32)2-661-0070
	미국(워싱턴)	전 화 : (+1)202-939-5677
	미국(LA)	전 화 : (+1)213-385-9300(내선 70)
	중국(북경)	전 화 : (+86)10-8531-0844
	중국(상해)	전 화 : (+86)21-6295-5000(내선 205)
	중국(홍콩)	전 화 : (+852)2862-1566
	중국(청도)	전 화 : (+86)532-8399-7732
	중국(대련)	전 화 : (+86)411-8235-6280
	일본(동경)	전 화 : (+81)3-6400-0695
	태국(방콕)	전 화 : (+66)2-247-3242
베트남(호치민)	전 화 : (+84)8-3822-5757(내선 128)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전 화 : (+62)21-2967-2555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 TIP 5 아세안 국가 FTA 사후신청 규정

(\*18. 10월말 현재)

국가	신청 기간	신청 요건
한국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요구조건 없음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신고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표시
캄보디아	소급기간 없음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인도네시아	소급기간 없음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 통지 수입자는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에 대한 보증금 120%를 납부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미얀마	소급기간 없음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리핀	수입일 이후 6개월 이내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MFN 세율과 AKFTA 협정세율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 보증서 (Post guarantee bond)*제시 *수입 후 6개월 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되면 이 보증서는 취소, 미제시되면 보증서 몰수
싱가포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특혜관세 사후신청 및 적용 이후에 수입자에게 관세 환불
태국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베트남	수입신고 후 30일 이내	수입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 TIP 6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유의사항 등

### 조회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 유의 사항

- 제조자(MANUFACTURER)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수출신고서상의 제조자와 일치
-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FOB 금액 필수 기재
- 여러규격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구분 기재
- 한-아세안 FTA는 HS2012 기준이므로 수출신고필증(HS2017)과 다를수 있으며 원산지 판정 등은 HS2012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이 엄격하여 환적항을 7번항목에 적고 통과화증권 제출
- 삼국무역의 경우 THIRD COUNTRY INVOICING에 체크하고 3국중계업체명 기재
- 연결(BACK TO BACK)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당초 증명서의 발급일자(번호)를 입력하고 최초 증명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수입자와 수출자는 동일하여야 함
- 선적 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원산지증명서 상 소급발급 문구(ISSUED RETROACTIVELY) 날인)
- 출력시 컬러프린터로 하고, 뒷면의 "Overleaf Notes"가 같은방향으로 인쇄



## AEO 활용



## TIP 1 AEO 제도

### AEO 란?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



## TIP 2 AEO-MRA(상호인정) 현황 및 혜택

### AEO-MRA 체결 현황

-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세계 最多 체결국



## AEO MRA 체결국(19개국) 현황

(\*18. 10월말 현재)



- (\*10년)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 (\*11년) 일본, 뉴질랜드
- (\*13년) 중국
- (\*14년) 홍콩, 멕시코, 터키
- (\*15년)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 (\*16년) 태국
- (\*17년) 호주, UAE, 말레이시아, 페루, 우루과이

- 수출규모가 크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전략적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여 협상을 지속적으로 전개

### AEO-MRA 혜택

-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 물품이 상대국 수입통관시 수입검사를 축소, AEO 화물 우선통관, 서류심사 간소화 등 혜택으로 수출입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확보



## TIP 3 AEO-MRA 활용방법

### 수출 화물

- 관세청 AEO 센터는 AEO 공인업체(수출업체)의 AEO ID, 상호, 주소 등을 AEO MRA 체결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
- AEO 공인업체는 MRA 체결 상대국 관세당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수입신고서 기재방법 등의 요령을 준수

### 수입 화물

- 한국과 MRA가 체결된 국가의 AEO 수출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해상·항공화물에 적용 (수입업체가 반드시 AEO 필요는 없음)
-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번함목)에 상대국 AEO 수출기업의 '해외거래처 부호'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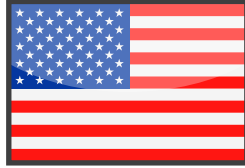


## 주요 국가별 관세청 민원센터 안내

('18. 10월말 현재)

국가	민원센터	연락처
대한민국	관세청 고객센터	(국내에서 걸때) 125 (해외에서 걸때) +82-2-3438 5199
미국	CBP Information Center	(해외에서 걸때) +1 202 325 8000
중국	전국세관 12360 서비스 핫라인	(대표번호) 010-12360 (지역번호) 세관소재지 지역번호-12360
홍콩	Report Information	(현지에서 걸때) 852 2815 7711 (Hotline) 852 2545 6182
일본	Customs Counselor	(현지에서 걸때) 도쿄세관 : 03-3529-0700 (현지에서 걸때) 오사카세관 : 06-6576-3001
러시아	FEDERAL CUSTOMS SERVICE(Contacts)	(해외에서 걸때) +7 499 449 7771 +7 499 449 7675
베트남	Public Service	(해외에서 걸때) +8424 3944 0833 (HotLine) 1900 9299
태국	Customs Care Center	(현지에서 걸때) 1164 (해외에서 걸때) +66 2667 6000/7000
인도네시아	Go Fas(t)	(현지에서 걸때) 1500-225
싱가포르	Ask Customs	(현지에서 걸때) 65 6355-2000
필리핀	BOC-Cares	(현지에서 걸때) 02-705-6000
인도	Central Board of Exercise and Customs Help	(현지연락처) 뭄바이 : (022) 2218 5289 (현지연락처) 첸나이 : (044) 2523 1207
독일	Customs' IKM	((해외에서 걸때) +49 351 44834-530
영국	Contact HM Revenue & Customs	(현지에서 걸때) 0300 200 3700
터키	Ministry of Customs and Trade Call Center	(해외에서 걸때) +90 312 449 10 00 (현지에서 걸때) Call Center 444 84 82
멕시코	Información Relacionada	(현지에서 걸때) 627 22 728
호주	Contact Cargo System Support	(현지에서 걸때) 1300 558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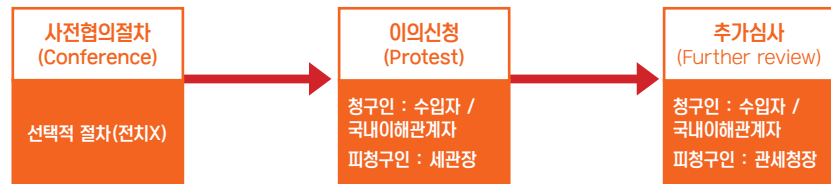
## Ⅲ. 국가별 주요 정보 0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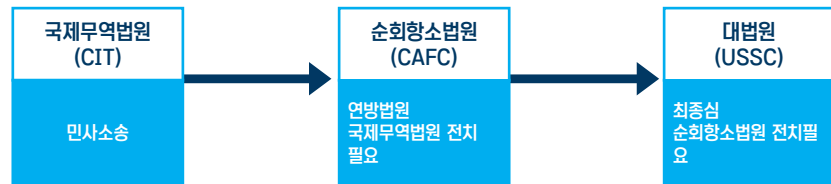
### 행정구제제도

- 미국의 경우 납세고지 전 납세자의 불복이유를 청취하는 청문(hearing)제도가 발달되어 있음
  - 조세쟁송제도의 절차 여러 부분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는 등 납세자 우호적임
- 미국의 행정구제는 행정심판과 사법심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실시됨
  - 행정심판은 납세자가 세관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시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사법심판은 처분에 불복 시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임
- 과세처분 전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사전협의(conference)가 가능하며 이는 선택적 절차임
  - 납세자는 사전협의절차에 대한 전치 없이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구제제도 절차(행정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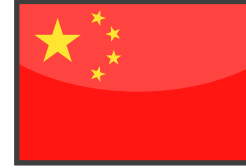


### 행정구제제도 절차(사법 심판)



출처 : 조세재정연구원 발간 자료

## Ⅲ. 국가별 주요 정보 02 중국



### 중국의 수입 금지 및 제한 물품 목록



구분	카테고리	품목
수입 금지	중고품	중고 기계전자 설비
	무기류	총기, 무기, 탄약 및 부품, 군사 장비, 모조 총기, 장난감 총
	예술품	고가의 골동품, 문화 유산
	생물	동물제품, 동물성 오일과 지방, 항체, 바이러스, 박테리아, 혈액, 뼈, 살아있는 동물, 곤충, 어류, 조류, 식물, 씨앗, 곡물 또는 토양 샘플, 각종 곡물류, 말린 과일, 견과류, 가죽, 죽은 동물의 사체, 유해 및 유골의 조직
	화학물질	생화학 폐기물, 연료 샘플, 석유 제품
	통화	동전, 지폐 등의 현금 및 주식, 채권과 같은 현금성 유가 증권
	위험물	폭발물, 가스, 인화성 액체, 배터리, 독성 및 전염성 물질
	전자제품	유해 폐기물
	식품	과일, 야채와 같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
	가죽	동물 가죽, 모피
수입 제한	주류	모든 주류 및 알코올 음료
	기계	레이더 장비
	의약품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 약물 샘플, 사용된 주사기, 피하 주사바늘 등 유해한 의료 폐기물, 의료장비
	기타	분말 또는 액체 형태로 된 모든 제품, 아타카르네 통관이 필요한 제품, 위조 제품, 복권 및 도박 제품, 병장 보관이 필요한 부패하기 쉬운 제품, 포르노 및 음란물, 보석, 귀금속, 멸종 위기 동물 및 야생 동물로 만든 제품
	담배	전자 담배, 모조 담배 포함
	목재	석탄, 장작, 가공되지 않은 목재
	예술품	고가의 미술품
	화장품	일반화장품
	통화	수표, 신용카드
	전자제품	휴대폰, 컴퓨터, 데스크 탑 컴퓨터, 노트북, 랩탑
영상매체	복사본, 마이크로 필름, 네거티브, 슬라이드	
기타	모조 보석을 포함한 보석류, 시계	

\* 자료 : 중국 해관,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60bd5834-2a8f-4d60-99bc-210759b7229b.html>, 물류회사, [http://www.qxpress.asia/html/prcenter\\_prohibited\\_items\\_view.html?nid=166](http://www.qxpress.asia/html/prcenter_prohibited_items_view.html?nid=166) 참고 (검색일자 2018. 9. 5.)

## Ⅲ. 국가별 주요 정보 03 일본



### 사전회시제도



-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율, 관세평가, 원산지를 세관에 사전 조회하고 문서 또는 e-mail로 회신 받을 수 있는 제도, 유효기간은 3년
- 조회는 구두(전화 또는 세관 창구) 및 e-메일로도 가능하나, 구두 조회(e-메일에 의한 조회 포함)는 수입신고 심사 시에 고려되는 사안이 아니며, 문서에 의한 경우와 취급이 다르므로 보다 정확성을 요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통해 조회할 것을 추천

### 사전회시 조회처 전화번호



하코다테세관	0138-40-4716	도쿄세관	03-3529-0700
요코하마세관	045-212-6156	나고야세관	052-654-4139
오사카세관	06-6576-3371	고베세관	078-333-3118
모지세관	050-3530-8373	나가사키세관	095-828-8669
오키나와지구세관	050-3530-8373		

### 세관상담관 제도

- 수출입 수속 등에 관한 상담·고충을 처리하고 관련 정보 제공

### 세관상담관 연락처



하코다테세관	0138-40-4261	도쿄세관	03-3529-0700
요코하마세관	045-212-6000	하네다세관	050-5533-6962
오사카세관	06-6576-3001	나리타세관	0476-34-2128
모지세관	050-3530-8372	나고야세관	052-654-4100
오키나와지구세관	098-863-0099	고베세관	078-333-3100
		나가사키세관	095-828-8619

### Ⅲ. 국가별 주요 정보 04 베트남



####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관세분야 리스크 체크포인트**
  - ☑ 회계부서/수출입부서 데이터 불일치
  - ☑ 면세원료 잔량 국내 판매시 미신고
  - ☑ 면세 기계설비 매각시 세관 미신고
  - ☑ 세관신고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불일치
  - ☑ 임가공/수출가공 기업 원료 폐기시 미신고
  - ☑ 수출용 원자재와 내수용 원자재 미구분 관리/사용
  - ☑ 실제 원료 수입량이 신고 수량보다 많은 경우
  - ☑ 수입신고 가격에 가산요소(로열티, 수수료, 운송비 등) 누락
  - ☑ 동일 물품에 대해 다른 HS코드로 신고



#### 오류신고 및 정산절차

세관신고서 오류의 자진 수정신고	정산절차 (한국에 없는 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 필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오류를 발견하여, 부족세액 및 지연이자 자진 납부</li> <li>●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도 오류를 발견하여, 부족세액 및 지연벌금 자진 납부(관세당국의 사후조사에 의한 가중처벌은 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수입, 제조, 수출 통관 후 수입신고서 정산 : 원료 수입절차 진행한 세관지국에서 실시</li> <li>● 경제특구, 보세구역내 생산업체의 정산보고 :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기간내의 수출·수입 물품, 반입·반출재고 현황에 대해 세관에 보고 - 관세총국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기간의 종료 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산보고</li> <li>● 기타 정산 : 수출업체에 원자재 공급, 일시 수출입, 임가공 수출입, 국내 보세공장간 거래,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설비·기계·원재료·반제품 수입, 보세 구역내 생산업체, 환급신청, 면세 등의 경우 해당 정산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 의무 ※ 수출입 유형에 따라, 정산신고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음 (현지 세관 확인 필수)</li> </ul>



### Ⅲ. 국가별 주요 정보 05 인도



####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단계	유의 사항
수입 신고 전 서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의 기재오류나 서류 상호간 불일치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류작성을 철저히 해야 함</li> <li>• 컨테이너 별로 포장명세서와 인보이스를 작성해야함</li> <li>• 수입업자와 협의하여 통관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임</li> <li>• 인도정부는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반드시 점검해야함</li> <li>• 인도에서는 CIF조건 수입은 허용되지만, C 또는 F조건 수입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통관상의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D조건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많음)</li> <li>• 인도는 항만, 도로 등의 인프라가 낙후돼 있고 운송수단도 노후하기 때문에 내륙운송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내륙운송보험에 가입해야함</li> </ul>
수입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S코드분류는 인도 수입업자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함</li> <li>• 세관 전자자료공유(EDI) 활용</li> <li>• 자회사-모회사와 같이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일 때, SVB Questionnaire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함</li> </ul>
심사 및 분류 (특혜관세,면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공인 프로그램(ACP)제도 또는 AEO 프로그램 활용</li> <li>- 신용이 공인된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는 경우, 수입화물의 규모에 맞추어 세관은 별도의 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세관의 국장은 신속 통관을 위해 노력함</li> </ul>
관세확정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확정 이후 8일을 초과하면 관세 납부 연체료를 연간 20% 복리로 부과함</li> <li>- 관세를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를 통해 관세확정을 지연시키면 연체료를 절감할 수 있음</li> </ul>
물품 반출 및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 정박시 국제 관례와 다르게 내용물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초과정박 비용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함</li> <li>- 수입한 화주가 나타나지 않아 항만 당국이 컨테이너를 1년 이상 묶어둔 사례도 있음</li> </ul>

### Ⅲ. 국가별 주요 정보 06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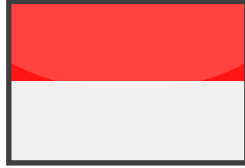
#### 수입 통관시 유의사항

- HS 코드 분류 : HS 오류에 의한 과다 벌금 부과 종종 발생 (사전확인제도 이용)
- 사후심사
  - 사후 심사 추정시 최대 부족세액의 4배 벌금
  - 물품이 통관 되었다 하더라도 세관 당국이 적법하게 통관 되었다고 인정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모아서 추정하는 경향)
- 수입요건 구비
  - 수입요건 미구비 물품에 대해 고의에 관계없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가액 상당 벌금 부과 → 사전 수입요건 철저 확인
- 정확한 서류 구비
  - 태국 세관은 FTA 신청물품, 세율 적용, 감면 적용 등에있어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간 모순이 없는 지 꼼꼼히 심사하는 경향

#### 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 및 분쟁 해결

- 품목분류 기준
  - 국제적 조화를 위해 88년 HS 협약 수용 → 관세율령에 반영
  - 매 5년마다 동 분류체계 수정작업 → 현재는 HS 2017 사용
  - ASEAN 회원국간 분류체계(8단위) 조화를 위한 AHTN 사용
- 분쟁 해결절차
  - 1) 수입자와 일선세관 담당공무원간 협의
  - 2) 의견 불일치시 관세청에 품목분류 결정을 요청할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요구(물품반출 희망 시 담보 기탁후 반출)
  - 3) 관세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Appeal Committee on Duty Assessment 에 이의제기 신청
  - 4) Appeal Committee 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장, 관련 법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Committee의 결정에 불복시 30일 이내 법원에 제소

### Ⅲ. 국가별 주요 정보 07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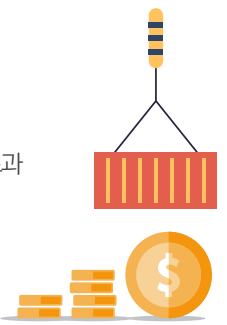


#### 수입승인 제도

- 수입업 면허 (API) : 제조업 또는 일반 수입업 중 택일
  - 제조업용 수입업(API-P) : 원자재, 자본재, 보완재만 수입가능
  - 재판매용 수입업(API-U) : 유통업을 위한 수입업 면허
- 상품에 대한 수입 허가 및 요건확인(LARTAS)
  - HS 기준 전품목의 48% 수준(무역부 등 19개 기관)
  - 이중 20.8% 만이 통관단계에서 확인(18년 이후)
  - 선적전 검사(Survey Report), 국가표준(SNI) 등록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 MFN 관세율 : 평균세율 7.9%(농산물 8.4%, 비농산물 7.8%)
-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 약 90% 일반품목 무세,
  - 의류 등 민감품목(985개): 5%, 초민감품목(378개): 5% 초과
  - 일반품목중 798개 품목은 상호대응세율 운영
- 부가세 : 10%, 소비세 : 담배 및 알콜함유 음료, 사치세
- 소득세 : 0.5% ~ 10% (개인의 경우 최고 20%)



#### FTA 활용 시 유의사항

-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Form AK) 원본 수입신고서 제출 : 수정본 사후제출 불수용
- 세번변경기준은 가격 기재 불필요
- 뒷면(Overleaf Note) 출력 필수
- 제3국 인보이스 체크
- 제3국 경유화물 : 통과선허증권 또는 수출국 선사의 경유지 확인서는 반드시 수입신고서 제출